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186

2021년 3월 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제안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2월 5일 김달호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1.3.2.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김달호 의원)

1. 제안이유

-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시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 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광고물은 증가(25만 5천건(2019) → 31만 2천건(2020)) 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매년 정기적인 시·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

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구청장의 불법광고물 정비와 정기적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근 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2항)
- 광고물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28조제3항)

Ⅲ. 검토보고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저감을 위해 불법광고물 시·구 합 동점검 시행과, 광고물실명제1)·불법광고물 실태조사 실시를 규 정하려는 것임.
- 옥외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옥상간판 등의 고정광고물과 전단지 ·벽보·현수막·입간판 등의 유동광고물로 편의상 구분되고²), 일 정 규모 이상의 고정광고물³) 또는 대부분의 유동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가운데(검토보고서 붙임²).

서울시의 전체 광고물 현황과 불법광고물 현황은 파악되지 못한 실정에서 집행부는 고정광고물의 80% 내외, 유동광고물의 대 부분을⁴⁾ 불법광고물로 추정하고 있음⁵⁾.

¹⁾ 실제 광고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모바일·전자적 방식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장에 서 광고물의 허가·신고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²⁾ 옥외광고물은 총 17종으로 분류되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편의상 고정·유동으로 구분

³⁾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면적 5㎡이 허가·신고대상임

⁴⁾ 일부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동광고물을 불법광고물로 추정

^{5) &#}x27;09년 행정안전부의 고정광고물 전국 전수조사 결과, 서울시의 불법광고물은 전체 고정

○ 불법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위치·표시방법·수량·규격 등을 위반한 광고 물로서, 서울시는 기동정비반 운영⑥, 수거보상제 실시7), 자치 구 자체정비 등을 통해 매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나, 광 고물 및 불법광고물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광고물 에서 불법광고물의 비중 그리고 매년 시행되는 불법광고물의 정 비 효과 등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불법광고물 정비방법 및 현황 (자료: 도시빛정책과)

(단위: 건)

	총계 [A+B+C+D]	기동정비반	수거보상제	자치구 자체정비	
연 도		(시.구합동) [A]	(자치구보조사업) [B]	유동광고물 〔C〕	고정광고물 〔D〕
계	121,275,115	23,543	86,143,914	35,084,287	23,371
2020년	40,038,867	7,432	26,241,186	13,785,814	4,435
2019년	39,970,412	9,628	32,342,558	7,609,880	8,346
2018년	41,265,836	6,483	27,560,170	13,688,593	10,590

[A] : 현수막 , [B] : 현수막, 벽보, 전단지, [C] : 현수막, 벽보, 전단지, 에어라이트, 입간판, [D] : 간판류(돌출, 옥상, 벽면, 지주)

광고물의 67%로 나타났고(적법광고물 435,105개, 불법광고물 874,259개), '12년 서울시일부 자치구의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광고물 비중은 65~86%로 나타남

※ '12년 자치구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현황 (자료: 도시빛정책과)

구별	총계	적법광고물 현황('12)			불법광고물 현황('12)		
		허가	신고	허가·신고배제	요건구비	요건불비	비율(%)
중구	52,551	1,164	1,172	8,455	9,182	32,548	79.4
광진	53,351	666	951	8,901	6,157	36,676	80.2
노원	53,211	1,737	743	5,215	8,768	36,748	85.5
양천	46,071	1,350	685	14,018	4,826	25,192	65.1

- 6) 공공용·상업용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한 일종의 용역사업으로('21년 시비 4억 5천만원 편성), 자치구·용역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총 3개팀이 연중 점검
- 7)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지 정비를 위한 시구 매칭사업으로(시:구=6:4, '21년 시비 7억6천 만원 편성) 자치구별 수거보상원을 선정하여(총 750명 정도 활동)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 (불법현수막: 건당 1,000~2,000원, 벽보·전단지: 장당 100원 이하)

- 따라서, 불법광고물 실태조사와 시·구 합동점검을 규정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 되며, 불법광고물 저감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의 실태 뿐 아니라 전체 옥외광고물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광고물의 수시적 변동성과 업무 부담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마다(예: 5년) 옥외광고물 현황조사와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정광고물인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5㎡ 이상이 허가·신고 대상이나 전체 간판의 30% 이상이 5㎡ 미만으로 추정되어 허가·신고에서 배제됨으로써 광고물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허가·신고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더불어, 무분별하게 게시·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을 규제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으므로, 홍보와 캠페인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인식과 저항력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정제된 광고가 사회적 경관과문화로서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Ⅷ.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구청장은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시행할수 있다.
- 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① (생 략)	및 제거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시장·구청장은 도시경관 개
	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
	법광고물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광
	고물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
	<u>다.</u>
<u><신 설></u>	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u>수 있다.</u>
② (생략)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